

[별표 12]

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(제34조 관련)

1. 수입원피: 원피 스크랩, 수구레 포함

가. 구제역 등 비발생국산

- 1) 현장검사 없이 검역시행장에 직송 운송통보, 소독실시 후 개방
- 2) 구제역 등 발생국 경유시 구제역 등 발생국산 검역방법 준용

나. 구제역 등 발생국산: 현장검사 실시

- 1) 검역시행장에 직송 운송통보, 소독실시 후 개방
- 2) 현장검사결과 오물 누수가 있는 검역물은 구내 검역창고에 입고 후 검역을 실시하고, 오물 누수장소는 유효 소독제로 소독실시
- 3) 구제역 등 발생국산은 필요시 수출국 소독사항을 검사(pH측정 등)함

2. 가공원피 (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)

가. 구제역 등 비발생국산: 서류검사 후 개방

- 1) 검역증명서 첨부시: 서류검사(역학조사)
- 2) 미첨부시: 구내 검역창고 입고, 소독실시 후 개방

나. 구제역 등 발생국산

- 1) 검역증명서 첨부시: 현장검사 없이 검역시행장 직송운송, 소독 후 개방
- 2) 미첨부시: 검역불합격

3. 소독방법

가.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(소독실시 기준) 준용